

자동차, 승객 및 화물 운송서비스, 체신 및 통신 서비스와 단체 관광이다.

HST 미시행 지역에서 시행지역으로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이 이동되는 경우에는 HST를 신고납부(self-assessment)해야 한다. 이것은 비상업활동, 비등록 중소기업자나 소비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HST 시행지역에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의 재화용역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면 된다.

캐나다 전역에서 재화용역세 사업등록자는 HST 시행지역으로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그 지역의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경우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한 HST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HST의 환급

종전의 재화용역세의 중간재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HST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등록자는 중간재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중간재 공제혜택은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이 소비, 사용 또는 등록자의 사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배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다른 주로 이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주분 HST가 환급된다. 또 물품의 사용 예정지에서 이미 소매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HST 미시행지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시행지역에서 과세대상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이루어진다.

① 비영리단체에 대한 환급

HST를 도입한 주들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s)에 대해 주분 HST를 환급한다.

② 공공단체에 대한 환급

재화용역세가 시행되던 시기에는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전액이 아닌 일부환급(partial rebate)이 이루어졌다. 환급대상은 기초자치단체(municipalities), 학교, 공립대학으로서 각각 57.14%, 83%, 68%의 환급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환급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주정부의 재원이 연방정부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HST가 도입된 후 Newfoundland and Labrador주는 HST 도입전보다 세부담이 낮거나, 주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면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New Brunswick주에서는 기초자치단체는 주분 HST의 57.14%를 환급받는다. Nova Scotia주에서는 기초단체, 병원, 학교, 공립대학이 환급대상이다.

③ 주택에 대한 환급

Nova Scotia주에서는 주된 주택(primary place)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된다. 이러한 주택의 범위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 공동주택 등을 포함된다.

5) 신고 의무

과세대상 물품이나 재화의 공급액이 6백